

|   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203190       |
| 의 퇴 인  | 박수민 의원  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 11. 11. |
| 추 계 번호 | 24F3136       |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의 출자전환 손실에 대하여 10년간  
손금산입 허용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**국회예산정책처**  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## 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  | 안 제104조의33<br>(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게 지급한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10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</li> <li>－ 출자전환 손실: (내국법인이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 - 출자전환 대여금의 장부가액)</li> </ul> |    |

## 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### 1. 근거 규정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미첨부 근거 규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04조의33<br>(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) |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|

### 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게 지급한 대여금(이하 ‘출자전환 대여금’)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10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,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 (안 제104조의33)

- 동법 동 조항<sup>1)</sup>은 현행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,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10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
- 개정안은 이러한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하는 경우, 출자전환일 기준

1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4조의33

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출자전환된 대여금의 장부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손실(이하 ‘출자전환 손실’)의 발생시, 그 손실에 대해서도 10년간 균등하게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

- 출자전환 손실은 (내국법인이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시가 - 출자전환 대여금 장부가액)으로 계산
- 다음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, 출자전환 손실의 손금산입 허용
  - ① 출자전환 대여금이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되었으며, 특수 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가지급금으로 지급되지 않았을 것
  - ② 2022년 이전 지급한 출자전환 대여금의 출자전환 이후 5년 이상 경과
  - ③ 특례를 적용하려는 사업연도 기준 10년 동안 해외건설자회사가 자본잠식 상태

□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향후 내국법인이 해외건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자본금 전환여부 및 시점,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내국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는 결정은 업황 및 해당 법인의 실적, 재무건전성 현황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으므로, 전환 여부 및 시점을 예측할 수 없음
- 또한, 개별 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의 대여금의 출자전환에 대하여 발생한 손익 등 집계된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손실 발생 여부와 발생규모 등을 추정할 수 없음
  - 참고로, 동법 동 조항에 따른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는 2023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되어 아직까지 공제실적이 발생하지 않음

### 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## IV. 작성자

### □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세제분석2과  | 박정환 | 백경엽 |

### □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|
| 박정환 | 02-6788-4835 | jhpark83@assembly.go.kr |